

사전컨설팅감사등적극행정지원에관한지침

제정 2022. 08. 01.

개정 2023. 12. 28.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감사부서에서 시행하는 사전컨설팅 감사의 대상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전컨설팅 감사”란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 임직원이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해당 업무의 수행에 앞서 업무 처리 방향 등에 대해 미리 감사의견을 듣는 것을 말한다.
2. “적극행정”이란 자체감사를 받는 자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사전컨설팅 감사의 대상) ① 사전컨설팅 신청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감사부서의 장에게 사전컨설팅 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

1. 진흥원의 업무 관련 규정 또는 내규의 해석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해 발생한 민원 업무
2.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적극행정이 필요하나 감사 부담으로 신속한 업무처리가 곤란한 경우
3. 그 밖에 감사가 기관의 제도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 소송, 수사 또는 다른 기관에서 감사 중인 사항, 다른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재심의 절차를 거친 사항 등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사전컨설팅 감사로 진행한 사안이 일상감사 대상범위에 해당할 경우, 일상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4조(사전컨설팅 감사의 신청) ① 진흥원 각 부서의 장은 업무의 수행에 앞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사전컨설팅 감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감사 부서의 장에게 사전컨설팅 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각 부서의 장은 감사부서의 장에게 사전컨설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체의견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감사부서의 장은 사전컨설팅 감사가 신청된 업무 중 사안이 중대한 경우, 다수 기관이 관련되어 있는 경우 또는 불명확한 규정 등으로 자체적인 판단이 어려운 신청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부서의 장의 의견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감사원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사전컨설팅 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제5조(사전컨설팅 감사의 기준) ① 제4조에 따른 사전컨설팅 감사 신청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처리한다.

1. 업무처리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로서 관련 임직원 등의 사적인 이익을 취득하거나 특정인에 대한 특혜 부여 등의 비위가 없을 것
2. 규정상의 의무 이행, 정부정책의 수립이나 집행, 국민 편익 증진 등을 위해 모든 여건에 비추어 해당 업무를 추진·처리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을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컨설팅 감사 신청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1. 금품수수, 고의·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의 경우
2.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규정의 본질적인 사항에 위배되는 경우
3. 위법·부당한 민원을 수용한 특혜성 업무처리의 경우
4.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위법·부당한 행위

제6조(사전컨설팅 감사의 실시) ① 사전컨설팅 감사는 서면자료를 기준으로 하되, 현장 확인 등을 함께할 수 있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출석 및 진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확인 및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직원은 감사부서의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③ 감사부서의 장은 사전컨설팅감사의 내용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이 크거나 다수의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사항 등에 해당되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사자문위원회 자문 또는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

제7조(사전컨설팅 감사 결과의 처리) ① 감사부서의 장은 사전컨설팅 감사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사전컨설팅 감사를 신청한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의견서를 통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한 차례에 한해 14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감사원에 신청한 사전컨설팅 감사를 포함한다)을 통보받은 부서의 장은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에 기속되지는 않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감사부서의 장은 사전컨설팅 감사 등 제반 감사활동을 통해 확인된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담당 부서 및 직원을 선정하여 인사규정 제38조(포상)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제8조(이행결과의 제출) 각 부서의 장은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감사부서의 장에게 이행계획 또는 이행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행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는 업무를 처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적극행정면책 등) ① 상임감사는 자체감사를 받는 자가 적극행정을 추진한 경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감사원 「감사사무처리규칙」 제33조 및 「내부감사규칙」 제19조의1제1항에 따라 징계 또는 문책 요구 등의 책임을 면제(이하 “적극행정면책”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② 자체감사를 받는 자가 적극행정면책의 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28.>

1.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

익을 위한 것일 것

2.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체감사를 받는 자가 감사원이나 문화체육관광부, 진흥원 감사부서에 사전컨설팅 감사를 신청하여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제2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자체감사를 받는 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적극행정면책을 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3.12.28.>

④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47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제도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을 이행한 경우에는 제2항에서 정한 적극행정면책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2023.12.28.>

⑤ 상임감사는 자체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검토한 결과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적극행정면책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면책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면책처리를 할 수 있다. <신설 2023.12.28.>

[제목개정 2023.12.28.]

제10조(자체 사전컨설팅) ① 감사부서의 장은 자체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체 사전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1. 사전컨설팅으로 진흥원의 업무개선이 명확히 예상되는 경우
2.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경우
3. 감사활동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경우

② 감사부서의 장은 제1항에 의한 자체 사전컨설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대상과 시기 등에 대하여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보칙) ① 이 지침에 의한 사전컨설팅에 대한 검토 등 처리는 동 지침에서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사규정과 내부감사규칙 등에 규정된 일반적인 절차에 따른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사전컨설팅을 실시

하여야 한다.

부 칙(2022.8.1.)

제1조(시행일) 본 지침은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12.28.)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사전컨설팅 감사 신청서

신청 부서명		
신청서 접수일		
신청 건명		
1. 사전컨설팅 감사 신청 내용 1) 개요 및 신청배경 2) 추진경과 3) 신청부서에서 확인 및 점검한 사항 2. 관련 규정 및 쟁점 1) 관련 규정 2) 주요 쟁점		

※ 붙임 : 관련 규정 조항, 해당 업무 세부자료 등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서

신청건명	
신청부서명	
의견	
기타	